

2019 도축장·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·평가 추진 계획

출처: 농림축산식품부

1. 추진 배경 및 현황

- ◎ (배경) 도축장·집유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작성 및 운용이 의무화
- 도축장·집유장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·평가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도모
 - *『축산물 위생관리법』제9조 제2항, 제9조의3 제2항, 제3항 및 제7항
- ◎ (현황) 도축장·집유장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협동으로 매년 조사·평가 실시
 - 도축장은 '12년부터 농식품부(검역본부) 주관으로 평가 실시
 - *'05~'11년까지는 소비자단체(한국소비자연맹 주관)에 위탁 평가실시
 - 집유장은 HACCP 의무화 추진('14.7.1~'16.1.1)에 따라 '15년부터 단계적(시범평가→본 평가)으로 농식품부(검역본부) 주관으로 평가 실시

'18년도 도축장·집유장 HACCP 운용수준 조사·평가 요약

- 평가 방법: 절대평가[보완(적합 중 보완대상), 재평가(부적합)으로 분류]
 - * 보완(적합 중 보완대상): 85% 이상, 재평가(부적합): 85% 미만
- 평가 주체: 농식품부(검역본부) 주관, 시·도, 소비자 단체, 전문가 참여
- 평가 결과

연도		'18년				'17년					
		총계	도축장			집유장	총계	도축장			
평가원료			소계	포유류	가금류			소계	포유류	가금류	
		191	129	81	48	62	191	128	79	49	63
HACCP 평가	보완 [적합중보완대상]	179 (94%)	119 (92%)	72 (89%)	47 (98%)	60 (97%)	170 (89%)	110 (86%)	69 (87%)	41 (84%)	60 (95%)
	재평가[부적합]	12 (6%)	10 (8%)	9 (11%)	1 (2%)	2 (3%)	21 (11%)	18 (14%)	10 (13%)	8 (16%)	3 (5%)

2. '19년도 추진 계획

가. HACCP 조사 · 평가

추진방향

- ◆ 실질적인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지도 위주 평가체계 강화
 - 사전교육 및 컨설팅 실시, 자율평가제 등을 통한 피드백 강화
 - 부적합 작업장은 재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
- ◆ 조사 · 평가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정한 평가 기반 확보
 - 지도관 · 전문관 교육을 통해 조사 · 평가자의 평가 기준 평준화
 - 조사 · 평가자 대상으로 모의조사 · 평가 실시(현장 사진 등을 활용)
- ◆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베스트작업장 선정 · 포상
 - 평가대상 중 HACCP 운용 등 위생관리가 우수한 곳은 소비자단체에서 별도 선정 및 포상, 홍보 등 실시로 인센티브 강화
 - ※ 포유류 4개소, 가금류 3, 집유장 2, 우수 시 · 도 1(예정)

◎ 조사 · 평가대상 : 198개소 내외

- 영업 중인 작업장 전체(휴업 제외)를 대상으로 실시
 - 도축장 136개소(포유류 84, 가금류 52) * 기타 축종(토끼 · 메추리 등)은 별도 조사 · 평가(검역본부)
- * 평가기간 중 휴업 작업장 제외, 시 · 도 확인 후 최종 평가대상 확정

◎ 조사 · 평가기간 : '19. 4~10월

- 추석 명절 및 하절기 가금육 성수기(복날) 등은 제외(1~2주)
 - * 평가반별 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◎ 조사 · 평가기관 : 농식품부 주관(검역본부 위임 수행)

- 시 · 도, 소비자단체, 외부 전문가, 동물위생시험소(도축검사관)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도축검사원) 참여

◎ 조사 · 평가반(이하 “평가반”으로 함) 구성

- 평가반 : 총 14개반 편성, 평가반원은 2~5명 내외 구성
 - 도축장(10개반 : 포유류 6개소, 가금류 4개소) : 평가 반별 운영 수준 상 · 중 · 하 작업장 균등 배치 (염소 전용 도축장 및 기타축종은 전담반 운영)
 - (반장) 검역본부 또는 시 · 도
 - (반원) 소비자단체, 외부전문가, 시험소, 방역본부 각 1명
- * 관련 전문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농식품부(검역본부)에서 최종 선정

◎ 도축장 주요 조사 · 평가 사항

○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 · 평가

-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2의2]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
주요 평가 항목

구 분	배 점	평가내용
① 인프라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축검사관이 공간 구축의 적정성(포3, 가5) ○ 작업장의 청결지역/오염지역 구획의 적정성(1) ○ 악취 및 폐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여건(1) ○ 도축장 내에서 식육 실가공 비율 (포2) ○ 실험실구축 및 실험자 능력정도(2) ○ 도축장 면적 (1)
② 선행요건관리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축장관리, 시설 및 설비관리, 위생관리, 검사관리, 영업자준수사항, 교육훈련 등 항목 평가(포57, 가56)
③ HACCP관리	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해분석, 중요관리점 관리, 검증 및 기록관리 등 26개 항목 평가
④ 미생물검사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생물(일반세균·대장균) 모니터링 결과 - 2018.1.1~2018.12.30의 미생물 검사결과 성적
(가점) 부산물관리 CCTV 설치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용부산물의 위생적 처리실태(3점 이내) ○ 도축장 출입차량 및 사람 방역조치 확인(1점)
총 점	100	

○ HACCP 운용 효과검증을 위한 미생물 검사결과 반영

- 시 · 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실시한 미생물 모니터링(일반세균수, 대장균수, 살모넬라) 검사결과 반영

*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미실시 도축장에 대하여는 전체 미생물검사 평균 점수 반영

* 살모넬라 부적합도축장 검출건별 1점씩 감점(최대 3점)

◎ 조사 · 평가 절차

○ 평가반은 사전 공지된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장에 방문하여 HACCP 운용 적정성 여부 조사 · 평가

-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평가표에 따른 선행요건관리 및 HACCP 관리 등 평가 후 산술평균

- 평가반원 간 현격한 이견이 있는 평가항목은 평가반장 주재로 협의 후 결정 가능

○ 농식품부(검역본부)는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 ·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, 판정기준에 따라 적 · 부 판정

- 평가반장(검역본부&시 · 도)은 평가반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, 서명 날인 후 해당 평가표를 검역본부(동물검역과)에 제출

* 평가 시 보완사항 및 권고사항을 구분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

○ 현장 실사 완료 후 보완 · 미흡사항 등을 포함한 조사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영업자에게 총평 실시

- * 총평은 사진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작업장이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(예 : 사진자료 및 전년 대비 평가결과 및 시·도 재평가 보완 사항을 비교 설명하여 피드백 강화)
- 보완·미흡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, 구체적인 내용은 검역본부(동물검역과)로 제출
- 소비자단체의 베스트작업장 선정·평가를 위하여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의 도축장 조사·평가 결과(점수 및 순위)를 소비자단체에 안내
 - ※ 소비자단체가 별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베스트작업장 선정·평가

◎ 결과 활용

- 평가 결과는 절대평리를 통해 HACCP 운용 적정성 적·부 판정
 - *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평가결과 각각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보완(적합 중 보완대상), 85점 미만 재평가(부적합)
- 평가 결과 재평가(부적합) 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강화(관할 시·도에서 기술지도 및 위생감시 실시) 등 차등관리
 - 조사·평가 결과, 작업장별 평가점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
 - 선행요건 관리 및 HACCP 관리 평가관련 재평가(부적합)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시·도에서 재평가 실시
 - 선행요건 관리 및 HACCP 관리 평가관련 보완조치 대상 작업장은 관할 시·도에서 보완사항 확인 및 미시정 시 행정처분 조치
 - * 시·도의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는 검역본부(동물검역과)로 통보
- HACCP 조사·평가 대상 중 베스트작업장 등은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별도 선정 및 포상 등 실시
 - 베스트작업장 : 포유류 4개소, 가금류 3, 집유장 2 (예정)
 - 우수 지자체 : 1개소 (예정)
 - * 평가반 구성 및 세부 운영 기준 등은 소비자단체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결정 및 사전공지

3. 금후 조치 계획

- ◎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·평가계획 통보(3월)
- ◎ HACCP 운용 적정성 여부 조사·평가 실시(4~10월)
 - ※ 평가 원료 작업장에 대해서는 연중 불시 위생감시 추가 실시 예정
- ◎ 평가결과 취합 및 결과보고, 발표 등(12월)
- ◎ 베스트작업장 선정결과 발표 및 포상 등(12월)

※ 자세한 사항(붙임자료 등)은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